

항공교통본부 청년인턴 추가 채용(3차) 공고

항공교통본부 공고 제2023- 호

항공교통본부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9일

항공교통본부장

1. 선발예정인원 (1개 분야, 총 2명)

지원코드	채용 분야	선발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인턴01	항공	2	항공교통본부(대구 동구)

가. 근무조건

- (신 분) 청년인턴(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최대 6개월로 세부사항은 조정가능
 - (보 수) 월2,030,690원(기본급 1,890,690원, 정액급식비 140,000원)
* 법정수당 발생 시 별도지급
 - (근무시간) 주 40시간(주5일, 일별 09:00 ~ 18:00, 휴게시간 12:00~13:00)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 무 지) 항공교통본부(본청)
 - － 항공교통본부(본청): 대구광역시 동구 매여로1길 50-12
- * 출퇴근 시 통근버스 운행 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나. 주요 업무 내용

- 주요 업무는 근무 부서와 계약 시 세부조정 될 수 있음
 - － 공통: 기타 부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포함

지원코드	채용 분야	담당 업무
인턴01	항공	○관제사 훈련 지원, 항공정보 품질 및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국제 동향 조사 및 자료 수집

2.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① (연령)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만 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 1년 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 이상 : 3세 연장

② (응시제한)

○ 「국토교통부 공무원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 결격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 준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자격증 등

지원코드	채용 분야	우대 요건
인턴01	항공	○항공분야 전공자 ○항공교통관제사(또는 운항관리사) 자격증 보유자 ○EPTA 4급 이상 자격보유자

○ 장애인

평정요소	배점	평가기준
장애인	10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다. 가산 요건

평정요소	배점	평가기준
가산요건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법률 참조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름

《 취업지원 대상자(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3.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지원코드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 서류전형 기준 : 1. 자기소개서, 2. 우대요건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9.7.(목) 17:00 예정
 - 기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 2차 면접일정 등 게재함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4. 시험 일정

- 시험공고 : 2023.8.9.(수) ~ 8.24.(목)
- 원서접수 : 2023.8.9.(수) ~ 8.24.(목) 18:00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 2023.9.7.(목)
-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2023.9.7.(목) ~ 9.11.(월)
- 면접시험일 : 2023.9.19.(화)
 -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일 : 2023.9.22.(금)
 -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나라일터 (www.gojobs.go.kr)에 공고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근로계약 체결 전 최종합격자가 포기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제출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일시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3.8.9.(수) ~ 8.24.(목) 18:00시
- 제출방법 :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확인메일 또는 문자 발송 예정)
 - e-mail : j2k1029@korea.kr(서명하여 pdf로 반드시 제출, 서명 없을 시 미제출로 간주)
 - ※ e-mail 제목은 반드시 "성명(지원분야)[예 : 홍길동(홍보)]으로 기재

나. 제출 서류

- 붙임 별지1호 '청년인턴 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필독 후 정확히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하는 서류>

서류합격자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아래 서류를 j2k1029@korea.kr (서명하여 pdf로 제출)

-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별지서식 제5호)

6. 유의 사항

- 동일한 날짜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항공교통본부(본청) 운영지원과(☎053-668-02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제1호>

청년인턴 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응시번호	지원코드	채용분야	성명	연락처
* 담당자 기재				* 핸드폰 번호

☐ 제출 서류에 ✓표시 후 아래 순서대로 제출

연번	서류명	비고	제출
1	응시원서 1부	별지1호 서식	
2	자기소개서 1부	별지2호 서식	
3	직무수행계획서	별지3호 서식	
4	주민등록 초본	병역사항 포함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4호 서식, 자필 서명	
이하부터는 해당자에 한함			
6	‘우대·가산 요건’에 해당하는 증명서	우대·가산 요건에 해당되는 증명서 기재 및 제출	

붙임의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

(인/서명)

응 시 원 서

본인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 월 일

항공교통본부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지원 코드		채용분야		복수국적 해당여부	☐ 예 ☐ 아니오
생년월일				우대·가산요건 대상자	☐ 예 ☐ 아니오
주 소		(☎)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청년인턴 채용시험)

※응시번호			지원 코드		채용 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23년 월 일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장 (인)						

주 의 사 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에 따른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작 성 요 령》

- ①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 ② 지원코드 및 채용분야: 공고문을 참고하여 정확히 기재
- ③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정확히 기재함
- ④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전자우편 있을 경우에만 작성
- ⑤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⑥ 가산요건대상자: 가산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관련기관에서 발급받은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반드시 첨부)

자 기 소 개 서

응시번호		지원코드		채용분야	
성명			생년월일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2장 이내로 작성

◎ 자기소개서

2023년 월 일

작 성 자

(서명)

<별지서식 제3호>

직무수행계획서

응시번호		지원코드		채용분야	
성명		생년월일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수행 계획서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시분야와 연계하여 직무에 대한 이해, 소견 및 응시 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구체적인 실천 방안 순으로 작성합니다.

※ A4용지 3매 내외로 작성

※ 휴먼명조체 13 Point 로 작성

2023년 월 일

작 성 자

(서명)

<별지서식 제4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청년인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본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7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합니다.

(1) 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자격·경력·학위) 확인기관	근로자 채용 관리 (자격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우대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청년인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고유식별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 (2) 고유식별 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 (3) 고유식별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4) 고유식별 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청년인턴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고유식별 정보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

항공교통본부장 귀하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응시번호	지원코드	지원분야	생년월일	성명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 해당 ☐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해당 ☐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에 동의합니다.

2023. . .

성명 : (서명)

항공교통본부장 귀하